

『인천광역시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2년 6월 12 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조례의 제명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「인천광역시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「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바꾸고, 위원회 구성인원을 9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변경하여 정비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 제명을 「인천광역시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「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
-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9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변경하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추가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1일(목)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(참조 : 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33, 팩스 032-440-8765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: ○성 명: ○연락처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자료

- 인천광역시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명 “인천광역시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인천광역시 공예명장
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9인”을 “10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관련 있는”을 “관
련 있는 자와 시의회에서 추천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인천광역시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 제7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(생략)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<u>9인</u>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③ 위원은 공예산업 분야별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및 이와 <u>관련 있는</u>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, 당해연도 명장 선정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. ④ (생략)	<u>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</u> 제7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10인</u> ----- ----- -----. ③ ----- ----- --- <u>관련 있는 자와 시의회에서 추천한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④ (현행과 같음)

관련 법령 검토와 발췌 사항

관계법령	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○ 제62조(민속공예산업에 대한 지원) ☐ 숙련기술장려법 ○ 제8조(정보관리체계의 구축·운영) ○ 제11조(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) “세부내용 별지 작성”
관련조례 정비대상	
관련자료	

관련 법령 발췌 사항

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

제62조(민속공예산업에 대한 지원)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□ 숙련기술장려법

제8조(정보관리체계의 구축·운영) 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장려 정책에 관한 정보를 관리·제공하고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숙련기술장려 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제11조(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)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.
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
2. 제1호에 따른 직종에서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
3.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

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숙련기술을 통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대한민국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.

③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④ 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체 지원 및 제18조에 따른 사회적 인식 제고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요건에 관한 사항, 선

정을 위한 심사절차, 우대내용 및 품위유지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, 위원회 구성인원을 9명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요인은 없음.

4. 작성자

- 산업위원회 김 정 현 의원